치위협 공고 2021-08호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제도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용역 사업 공고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제도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3.23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1. 연구용역사업 과제

가. 배경 및 목적

- ❍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우수한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치과위생사 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 이에 따라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정립을 위한 규정, 자격인증 및 제도운영 방안이 필요함. 또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노인전문치과위생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요구됨
- ❍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의 실현을 통하여 치과위생사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나. 연구의 주요 내용

- ❍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정립을 위한 규정 마련
- ❍ 전문치과위생사 자격인증 및 제도운영방안 제시
- ❍ 전문치과위생사 자격관리 전문기관의 조직 및 운영(안) 제시
- ❍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노인전문치과위생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운영방안 개발
- ❍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향후 전망

다. 수행 용역비 : 15,000천원

라. 수행 기간 : 8개월 이내

2. 연구수행 자격 및 제한

가.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신청 자격

1) 연구기관의 경우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분야의 연구 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 보건의료분야의 연구 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2) 연구책임자

- 본 협회 등록정회원(평생회원 포함)인 자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나. 연구 참여자 자격

1) 치위생학, 치의학, 보건학 등 보건의료분야에 박식하고 연구능력을 갖춘 자
2) 치과위생사를 50% 이상 구성하되 치과위생사는 협회 등록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이어야 함

3. 연구 신청서 제출

가. 연구과제 지원신청서 작성

- 신청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협회에 대한 협조 및 요청사항 적시 가능
- 제안서 전체 분량은 50페이지 이내 (필요시 요약본은 별도 제출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나. 신청서 제출

1) 제출 기한 : 2021. 4. 5.(월) 18:00

2) 제출 서류 : 연구과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붙임 참조) 각 1부

3)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E-mail 접수 중 택일
   - 방문이나 우편접수 시에도 신청서는 전자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본 협회의 평가절차와 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서명날인 필수

4) 제출처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주소 : (0246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66 치과위생사회관
   - 전화 : 02-6213-2742 (담당자 : 설유진 대리)
   - E-mail : academic@kdha.or.kr

5) 연구수행자 선정 : 심의 선정 후 개별 통보

6) 연구중간보고 : 서면보고

7) 연구결과보고 : 연구계약 종료 15일 전까지 연구결과보고서(파일) 제출